



CITY OF OCEANSIDE

금융 서비스과

요금 미납에 따른 단수 정책

2020년 2월 1일 시행

개요

오션사이드시(City of Oceanside, 이하 '시'로 칭함)는 다음의 정책을 제정하여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수도 서비스 이용자가 경제적 곤경으로 인한 요금 미납 때문에 수도 서비스의 중단을 겪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 정책은 시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책에 관한 문의 사항은 (760) 435-3900 으로 연락 바랍니다.

공지 사항

청구일로부터 평일 기준 25 일 이내에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계좌는 연체로 간주합니다. 연체 계좌는 상하수도 요금의 10% 가 연체료로 부과됩니다. 시는 수도 서비스 사용자의 납부가 60 일까지 연체되더라도 미납의 이유로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시는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기 15 일 이내에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 시는 본 정책을 고지할 것입니다. 또한 시는 미납에 따른 단수를 면할 수 있는 사용자의 선택 방안을 설명할 것이며, 이는 별도의 납부 일정과 고지서에 대한 재검토 및 이의제기를 포함합니다.

우편으로 연락하는 경우 시는 사용자의 계좌에 기재된 청구지 주소로 서면 단수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청구지 주소와 서비스 주소가 다르면 두 번째 통지서는 서비스 주소로 '거주자'에게 발송할 것입니다. 서면 통지서에는 사용자 이름과 주소, 연체 금액, 단수를 면하기 위한 납부 일자나 별도의 납부 일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통지서에는 연체 금액의 납부 기한 연장을 위한 절차, 고지서에 대한 재검토 및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 연체 금액의 할부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면 통지서가 수취되지 않는다면 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 주소지를 방문하여 임박한 단수조치를 알리는 서면 통지서와 본 정책의 사본을 주거지에 거주하는 성인에게 전달하거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둘 것입니다.

개별 계량기를 가진 주거 시설의 임차인이나 거주자에 대한 통지 개별 계량 서비스를 가진 주거 시설의 임대인이 연체 계좌를 가진 사용자라면, 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기 10 일 전까지 주거지의 임차인이나 거주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서면 통지서에는 해당 주거지의 수도 서비스에 추후 부과될 요금을 낼 금전적 의무를 다할 의지와 능력을 보이는 한, 임차인이나 거주자가 연체 계좌의 금액 지불 없이 시의 수도 사용자가 될 권리가



CITY OF OCEANSIDE

금융 서비스과

있음을 안내할 것입니다. 임차인이나 거주자는 주거를 입증할 수 있는 리스나 렌트 계약서, 렌트 영수증, 거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렌트 중임을 나타내는 정부 문서, 기타 용인 가능한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스터 계량기를 가진 다세대 주거 시설의 임차인이나 거주자에 대한 통지 마스터 계량기를 가진 다세대 주거 시설의 임대인이 연체 계좌를 가진 사용자라면, 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기 10 일 전까지 주거지의 각 세대 임차인이나 거주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서면 통지서에는 임차인이나 거주자가 연체 계좌의 금액 지불 없이 시의 수도 서비스 사용자가 될 권리가 있음을 안내할 것입니다. 마스터 계량기를 가진 해당 주거지에 한 명 이상의 거주자가 수도 서비스에 추후 부과될 요금의 납부 의무를 다할 의지와 능력을 시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이는 한, 또는 시의 서비스 제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이나 거주자에게 선택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시의 물리적 수단이 있는 한, 시는 조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선택 방안

고지서에 대한 재검토 및 이의제기: 사용자가 수도요금 고지서에 이론을 제기하려면, 청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고지서 재검토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고지서 납부기한은 지켜야만 합니다. 이론이 제기된 금액에 대해 추후 부정확했던 것으로 판명이 나면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별도 납부 일정: 자격을 갖춘 사용자가 주거 시설의 수도 서비스를 정상 납부 기한내 납입할 수 없다면 연체료와 단수를 면하기 위해 별도의 납부 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납부 일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088(A)(1)(b)를 충족하며, 단수 조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부동산의 거주자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료 진단서(primary care provider certific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의 정규 청구 기한내에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재정적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재정적 납부 불가의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가구의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다음 프로그램의 수혜자일 것: CalWORKS, CalFresh, 일반적인 지원, Medi-Cal,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Program, 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 또는 사용자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Level)의 200 퍼센트 미만임을 신고.



CITY OF OCEANSIDE

금융 서비스과

- 시가 제공하고 본 정책에 따르는 별도 납부 일정의 체결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납부 일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라면,

- 사용자는 고지서의 원래 납부 기한으로부터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합의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총 금액을 할부 상환하는, 시와의 별도 납부 일정 계약서(Alternate Payment Arrangement Agreement)에 서명해야 합니다.
- 합의 금액(할부 금액)은 이전 미납부 금액의 청산을 위해 정규 월간 고지서에 부과됩니다.
- 사용자의 계좌는 추후 모든 청구 기한들에 대해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이전 고지서에 대한 연체 금액을 납부하는 동안 추후 미납부 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할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납부 일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발생하는 수도 서비스 요금을 60 일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시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것입니다. 시는 평일 기준 5 일 이전에 최종 단수 통지서를 서비스 주소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할 것입니다. 시가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사용자의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면 시는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할 것입니다.

서비스 재개

미납에 따른 단수로부터 서비스를 재개하려면 사용자는 재급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시는 가능한 빠르게 급수를 재개할 것이나 단수가 된 계좌에서 미납금, 연체료, 재급수 수수료가 납입된 후, 평일 기준 익일 이전까지 서비스를 재개할 것입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후 5 시 이후, 금요일 오후 4 시 이후, 주말이나 공휴일에 재개되는 서비스에 대해 시간외 재급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